

#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4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8. 24.  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7조).
- 나.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1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
  - 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2) 입법예고 : 2007. 6. 22.~7. 13.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 출연금
2. 이자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
2.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
3. 근로자교육 · 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
4.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  
②기금의 지원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

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심의위원회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투자통상본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의원
2.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
3.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4.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,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2조(수당 및 여비)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계관직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투자통상본부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기업지원팀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제14조(준용)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「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③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42조 (재산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를 말한다.

### 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- 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 보관의 절차, 풍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 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】

**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**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